

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(안)

제9편 추가설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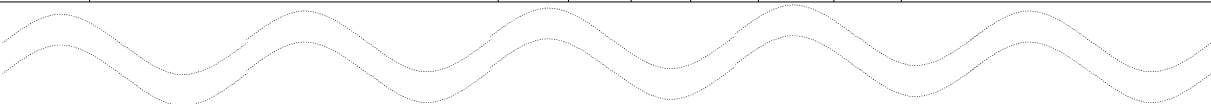
2021.07.01.일자 시행사항

건조계약일 기준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자동화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2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주추진기관 등의 집중감시제어설비</p> <p>301. - 304. <생략></p> <p>305. 주추진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【지침 참조】</p> <p>1. - 3. <생략></p> <p>4. 안전조치</p> <p>(1) - (6) <생략></p> <p>(7) 크로스헤드형 디젤 주기관 크로스헤드형 디젤 주기관에는 표 9.3.1에 표시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8)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 주기관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 주기관에는 표 9.3.2에 표시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9) 증기터빈 주기관 증기터빈 주기관에는 표 9.3.3에 표시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10) - (11) <생략></p> <p>306. 보일러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</p> <p>1. - 3. <생략></p> <p>4. 안전조치</p> <p>(1) <생략></p> <p>(2) 주보일러에는 표 9.3.6에 표시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3) <생략></p> <p>307. - 310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- 제 5 절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자동화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2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주추진기관 등의 집중감시제어설비</p> <p>301. - 304. <현행과 동일></p> <p>305. 주추진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【지침 참조】</p> <p>1. - 3. <현행과 동일></p> <p>4. 안전조치</p> <p>(1) - (6) <현행과 동일></p> <p>(7) 크로스헤드형 디젤 주기관 크로스헤드형 디젤 주기관에는 표 9.3.1에 표시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8)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 주기관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 주기관에는 표 9.3.2에 표시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9) 증기터빈 주기관 증기터빈 주기관에는 표 9.3.3에 표시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10) - (11) <현행과 동일></p> <p>306. 보일러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</p> <p>1. - 3. <현행과 동일></p> <p>4. 안전조치</p> <p>(1) <현행과 동일></p> <p>(2) 주보일러에는 표 9.3.6에 표시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3) <현행과 동일></p> <p>307. - 310.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- 제 5 절 <현행과 동일></p>	<p>(개정)</p> <p>- 감지기(Sensor)의 공통 및 분리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도록 요건을 개정함.</p> <p>: 표 9.3.1, 표 9.3.2, 표 9.3.3, 표 9.3.6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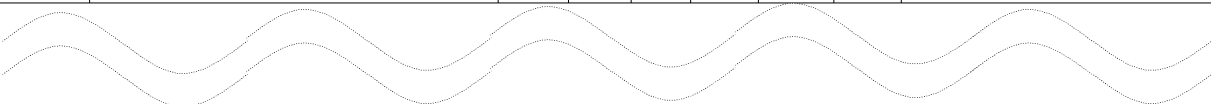
<현행>

표 9.3.1 크로스헤드형 디젤 주기관 (2020)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O=이상상태]	경보 작동	원격 표시 *	경보, 자동 감속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=적용]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c	c	c	s	s	c: 공통(common) s: 분리(separate)
연료유	필터 출구 연료 압력(기관 입구)	L	●	●		●	
	분사펌프 입구 연료유 온도 (또는 점도-L)	H	●				
	분사펌프 입구 연료유 온도 (또는 점도-H)	L	●				
	고압관 누유	O	●				
	연료유 서비스탱크 액면	L	●				
	커먼레일(common rail) 연료유 압력	L	●				
							
전원	제어, 경보 또는 안전시스템의 전원고장	O	●				
(비고) * 원격표시라 함은 기관제어실 또는 다른 집중제어실 내에 값을 표시함을 말한다. (1) - (2) <생략>							


〈개정안〉

표 9.3.1 크로스헤드형 디젤 주기관 (2020)(2021)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O=이상상태]	경보 작동	원격 표시 *	경보, 자동 감속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=적용]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	c Gr 1	s Gr 2	s Gr 3		e: 공통(common) s: 분리(separate)
연료유	필터 출구 연료 압력(기관 입구)	L	●	●		●	
	분사펌프 입구 연료유 온도 (또는 점도-L)	H	●				
	분사펌프 입구 연료유 온도 (또는 점도-H)	L	●				
	고압관 누유	O	●				
	연료유 서비스탱크 액면	L	●				
	커먼레일(common rail) 연료유 압력	L	●				
							
전원	제어, 경보 또는 안전시스템의 전원고장	O	●				
(비고) * 원격표시라 함은 기관제어실 또는 다른 집중제어실 내에 값을 표시함을 말한다. * Gr 1 : 표시, 경보, 감속용 공통 감지기 Gr 2 : 경보 및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용 감지기 Gr 3 : 긴급정지용 감지기 (1) - (2) <현행과 동일>							


<현행>

표 9.3.2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 주기관 (2020)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O=이상상태]	경보 작동	원격 표시 *	경보, 자동 감속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=적용]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c	c	c	s	s	c: 공통(common) s: 분리(separate)
연료유	필터 출구 연료 압력(기관 입구)	L	●	●		●	
	분사펌프 입구 연료유 온도 (또는 점도-L)	H	●				중유연소기관에만 적용함.
	분사펌프 입구 연료유 온도 (또는 점도-H)	L	●				중유연소기관에만 적용함.
	고압관으로부터의 누유	O	●				
	연료유 서비스탱크 액면	L	●				
	커먼레일(common rail) 연료유 압력	L	●				
							
전원	제어, 경보 또는 안전시스템의 전원고장	O	●				
(비고) * 원격표시라 함은 기관제어실 또는 다른 집중제어실 내에 값을 표시함을 말한다. (1) - (2) <생략>							


<개정안>

표 9.3.2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 주기판 (2020)(2021)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O=이상상태]	경보 작동	원격 표시 *	경보, 자동 감속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=적용]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	e Gr 1	s Gr 2	s Gr 3		e: 공통(common) s: 분리(separate)
연료유	필터 출구 연료 압력(기관 입구)	L	●	●		●	
	분사펌프 입구 연료유 온도 (또는 점도-L)	H	●				중유연소기관에만 적용함.
	분사펌프 입구 연료유 온도 (또는 점도-H)	L	●				중유연소기관에만 적용함.
	고압관으로부터의 누유	O	●				
	연료유 서비스탱크 액면	L	●				
	커먼레일(common rail) 연료유 압력	L	●				
							
전원	제어, 경보 또는 안전시스템의 전원고장	O	●				
(비고) * 원격표시라 함은 기관제어실 또는 다른 집중제어실 내에 값을 표시함을 말한다. * Gr 1 : 표시, 경보, 감속용 공통 감지기 Gr 2 : 경보 및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용 감지기 Gr 3 : 긴급정지용 감지기 (1) - (2) <현행과 동일>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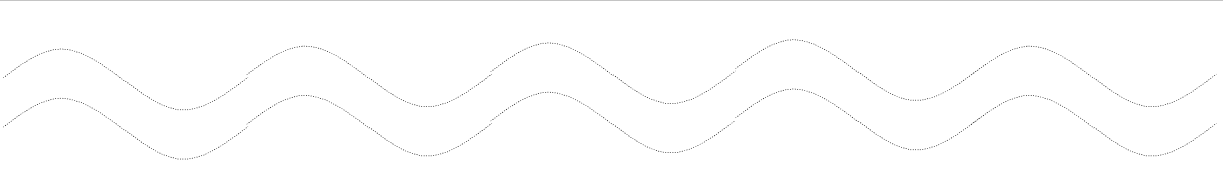
<현행>

표 9.3.3 증기터빈 주기관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O=이상상태]		경보 작동	원격 표시 *	경보, 자동 감속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=적용]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O	c	c	c	s	s	c: 공통(common) s: 분리(separate)
윤활유	베어링 입구 압력	L	●	●		●	●	터빈, 기어 및 추력베어링용
	베어링 입구 온도	H	●	●				터빈, 기어 및 추력베어링용
	베어링 온도 (또는 베어링 윤활유출구 온도-H)	H	●	●				터빈, 기어 및 추력베어링용
	필터 차압	H	●					
	중력탱크 및 섬프 액면	L	●	●				
								
전원	스로틀제어시스템 전원 고장	O	●					
(비고) * 원격표시라 함은 기관제어실 또는 다른 집중제어실 내에 값을 표시함을 말한다.								


<개정안>

표 9.3.3 증기터빈 주기관 (2021)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O=이상상태]		경보 작동	원격 표시 *	경보, 자동 감속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 = 적용]
	공통 또는 분리	O						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O						c: 공통 (common) s: 분리 (separate)
운할유	베어링 입구 압력	L	●	●		●	●	터빈, 기어 및 추력베어링용
	베어링 입구 온도	H	●	●				터빈, 기어 및 추력베어링용
	베어링 온도 (또는 베어링 운할유출구 온도-H)	H	●	●				터빈, 기어 및 추력베어링용
	필터 차압	H	●					
	중력탱크 및 섬프 액면	L	●	●				
								
전원	스로틀제어시스템 전원 고장	O	●					
<p>(비고)</p> <p>* 원격표시라 함은 기관제어실 또는 다른 집중제어실 내에 값을 표시함을 말한다.</p> <p>* Gr 1 : 표시, 경보, 감속용 공통 감지기 Gr 2 : 경보 및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용 감지기 Gr 3 : 긴급정지용 감지기</p>								


<현행>

표 9.3.6 주보일러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LL=저저 O=이상상태]		경 보 작 동	원 격 표 시 *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=적용]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	c	c	s	s	c: 공통(common) s: 분리(separate)
급수	대기압 드레인탱크 액면	H L	●	●			
	공기분리기 액면	H L	●	●			
	공기분리기 압력	H L	●	●			
	급수펌프 압력	L	●	●	●		
	급수 온도	H	●	●			
	급수출구 온도	H	●	●			
							
전원	제어시스템 전원공급 - 실패	O	●	●		●	연료밸브의 자동폐쇄
(비고) * 원격표시라 함은 기관제어실 또는 다른 집중제어실 내에 값을 표시함을 말한다.							

<개정안>

표 9.3.6 주보일러 (2021)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LL=저저 O=이상상태]	경 보 작 동	원 격 표 시 *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=적용]	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	c Gr 1	s Gr 2	s Gr 3	c: 공통(common) s: 분리(separate)	
급수	대기압 드레인탱크 액면	H L	●	●			
	공기분리기 액면	H L	●	●			
	공기분리기 압력	H L	●	●			
	급수펌프 압력	L	●	●	●		
	급수 온도	H	●	●			
	급수출구 염도	H	●	●			
							
전원	제어시스템 전원공급 - 실패	O	●	●		●	연료밸브의 자동폐쇄
(비고) * 원격표시라 함은 기관제어실 또는 다른 집중제어실 내에 값을 표시함을 말한다. * Gr 1 : 표시, 경보, 감속용 공통 감지기 Gr 2 : 경보 및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용 감지기 Gr 3 : 긴급정지용 감지기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8 장 고전압 선외수선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2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시험 및 검사</p> <p>301. 공장시험</p> <p>1. 형식승인</p> <p>(1) <u>6편 1장 103.의 1항 (1)호에서 요구하는 전기기기 및 케이블은 선내 설치 이전에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(2) <u>고전압 선외수전반 및 고전압 본선수전반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2. <생략></p> <p>302. - 303.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8 장 고전압 선외수선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2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시험 및 검사</p> <p>301. 공장시험 일반사항</p> <p>1. 형식승인 일반사항 (2021)</p> <p>(1) 6편 1장 103.의 1항 (1)호에서 요구하는 전기기기 및 케이블은 선내 설치 이전에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. 6편 1장에 해당되는 전기기기 및 케이블은 6편 1장 103.의 표 6.1.1에 따른다.</p> <p>(2) 고전압 선외수전반 및 고전압 본선수전반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2. <현행과 동일></p> <p>302. - 303. <현행과 동일></p>	<p>(개정)</p> <p>- 일반적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규정하는 규칙 6편과 상이한 내용이 존재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규칙 6편과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정함. (일반적으로 배전반은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함)</p>

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(안)

(제 9편 추가설비)

(2장-외부의견조회)

2020. 04.



선 체 규 칙 개 발 팀

- 주 요 개 정 내 용 -

(1) 2020.06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
● COVID-19 Pandemic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요건 신설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장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하역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검사</p> <p>201. <생략></p> <p>202. 하역설비의 검사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검사시기</p> <p>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는 다음에 따른다.</p> <p>(1) 등록검사는 안전사용하중 등을 처음으로 지정할 때 시행한다.</p> <p>(2) 연차검사는 선급 정기적 검사 기준일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.</p> <p>(3) 하중시험은 등록검사시기 및 등록검사나 전회 하중시험 완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시행한다.</p> <p>(4) 임시검사는 하역장치가 정기적 검사를 받을 시기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행한다.</p> <p>(가) 구조부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때 및 수리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</p> <p>(나) 하역절차, 리깅배치, 작동 및 제어방법에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</p> <p>(다) 안전사용하중의 지정 및 표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</p> <p>(라)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【지침 참조】</p> <p><새롭게 추가></p> <p>3. <생략></p> <p>203. ~ 205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~ 제 9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~ 제 10 장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장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하역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검사</p> <p>201. <현행과 동일></p> <p>202. 하역설비의 검사</p> <p>1. <현행과 동일></p> <p>2. 검사시기</p> <p>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는 다음에 따른다.</p> <p>(1) 등록검사는 안전사용하중 등을 처음으로 지정할 때 시행한다.</p> <p>(2) 연차검사는 선급 정기적 검사 기준일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.</p> <p>(3) 하중시험은 등록검사시기 및 등록검사나 전회 하중시험 완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시행한다.</p> <p>(4) 임시검사는 하역장치가 정기적 검사를 받을 시기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행한다.</p> <p>(가) 구조부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때 및 수리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</p> <p>(나) 하역절차, 리깅배치, 작동 및 제어방법에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</p> <p>(다) 안전사용하중의 지정 및 표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</p> <p>(라)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【지침 참조】</p> <p>(5) (2)호에서 (4)호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검사 연기는 1편 1장 901.의 6항을 따른다.</p> <p>3. <현행과 동일></p> <p>203. ~ 205.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~ 제 9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~ 제 10 장 <현행과 동일></p>	<p>- COVID-19 Pandemic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요건을 신설함</p>

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(안)

(기관전문위원회 용)

제9편 추가설비

2020. 9.



기 관 규 칙 개 발 팀

- 주 요 개 정 내 용 -

(1) 2021.07.01.일자 시행사항 (건조계약일 또는 평형수처리장치 설치일 기준)

◎ BWM 협약 최신 개정 반영

◎ 환경배관팀 제개정요청 (ENP4500-935-2020)을 반영하여, 도면 승인 목록을 개정함.

◎ 기자재팀 제개정요청 (MET4600-335-2020)을 반영하여, 협약의 개정에 따른 적용 일자를 자세히 표기함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0 장 평형수관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2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평형수처리장치</p> <p>301. 일반사항</p> <p>1. 적용</p> <p>(1) 이 절은 평형수관리 방법으로서 평형수처리장치를 채택한 선박에 적용한다.</p> <p>(2) 평형수처리장치는 평형수 협약의 평형수 배출 성능기준(D-2)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(3) 평형수처리장치는 <u>지침 G8, 평형수처리장치의 승인을 위한 지침(IMO Res. MEPC.174(58))에 따라 우리 선급 및 기국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<u>(2018)</u></p> <p>(4) ~ (6) <생략></p> <p>302. ~ 305.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0 장 평형수관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2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평형수처리장치</p> <p>301. 일반사항</p> <p>1. 적용</p> <p>(1) 이 절은 평형수관리 방법으로서 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하는 선박에 적용한다.</p> <p>(2) 평형수처리장치는 평형수 협약의 평형수 배출 성능기준(D-2)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(3) 평형수처리장치는 다음에 따라 우리 선급 및 기국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. <u>(2021)</u></p> <p>(가) 2020년 10월 28일 이후 설치된* 평형수처리장치: IMO의 Res. <u>MEPC.300(72) (BWMS Code) 또는 Res. MEPC.279(70) (2016 G8 지침)</u></p> <p>(나) 2020년 10월 28일 전에 설치된* 평형수처리장치: IMO의 Res. <u>MEPC.300(72) (BWMS Code), Res. MEPC.279(70) (2016 G8 지침) 또는 Res. MEPC.174(58)(G8 지침)</u></p> <p>(다) (가)호와 (나)호에서 '설치된'이란 평형수처리장치를 본선에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일자를 말한다. 계약상 일자가 없는 경우, 평형수처리장치를 본선에 실제 인도한 일자를 말한다. 또한 국제평형수관리증서(Inter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Certificate)에는 평형수처리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설치일과 그 이후 시운전한 일자, 두 일자가 존재할 수 있다.</p> <p>(4) ~ (6) <현행과 동일></p> <p>302. ~ 305. <현행과 동일></p>	<p>(개정)</p> <p>-기자재팀 재개정 요청 (MET4600-335-2020)</p> <p>: 협약의 개정에 따른 적용 일자를 명확히 표기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306. 시험 및 검사</p> <p>1. 일반사항 (2018)</p> <p>(1) ~ (2) <omitted></p> <p>2. 등록검사</p> <p>(1) 제출도면 및 자료</p> <p><u>제조중등등록검사를 받으려 하는 평형수처리장치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(가) <u>평형수처리장치의 일반배치도</u></p> <p>(나) 평형수 관계통도</p> <p>(다) <u>평형수 및 침전물의 시료채취구 배치도</u></p> <p>(라) <u>평형수처리장치의 전기계통도</u></p> <p>(마) 주입관, 드레인, 벤트, 드립트레이(drip tray) 등을 포함하는 화학품 저장 탱크 도면</p> <p>(바) 독성 또는 인화성 가스 탐지장치의 배치도</p> <p>(사) <u>선내시험 또는 시운전 절차서</u></p> <p>(아) <u>평형수관리계획서</u></p> <p>(2) 시험 및 검사</p> <p>(가) 평형수처리장치의 관장치 및 제어설비는 5편 및 6편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.</p> <p>(나) <u>지침 G8(IMO Res. MEPC.174(58))의 8.1항에서</u> 요구하는 문서가 본선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.</p> <p>(다) <u>지침 G8(IMO Res. MEPC.174(58))의 8.2항에서</u>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한다.</p> <p>(라) 평형수처리장치는 선내시험 또는 시운전 시에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.</p>	<p>306. 시험 및 검사</p> <p>1. 일반사항 (2018)</p> <p>(1) ~ (2) <same as the present></p> <p>2. 등록검사</p> <p>(1) 제출도면 및 자료</p> <p><u>평형수처리장치를 최초로 설치하거나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, 설치 공사 착수 전에 평형수처리장치에 대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(가) <u>평형수처리장치의 기본사양서</u></p> <p>(나) 평형수 관계통도</p> <p>(다) <u>평형수의 시료채취구 배치도</u></p> <p>(라) <u>전기계통도</u></p> <p>(마) 주입관, 드레인, 벤트, 드립트레이(drip tray) 등을 포함하는 화학품 저장 탱크 도면 (해당하는 경우)</p> <p>(바) 독성 또는 인화성 가스 탐지장치의 배치도</p> <p>(사) 선내시험 또는 시운전 절차서</p> <p>(아) <u>평형수관리계획서</u></p> <p>(사) <u>작동 및 정비 지침서</u></p> <p>(2) 시험 및 검사</p> <p>(가) 평형수처리장치의 관장치 및 제어설비는 5편 및 6편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.</p> <p>(나) <u>IMO Res. MEPC.279(70) 또는 Res. MEPC.300(72)의 8.2항에서</u> 요구하는 문서가 본선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. 단, <u>IMO Res. MEPC.174(58)에</u> 따라 승인된 평형수처리장치의 경우, <u>IMO Res. MEPC.174(58)의 8.1항에서</u> 요구하는 문서를 확인 한다.</p> <p>(다) <u>IMO Res. MEPC.279(70) 또는 Res. MEPC.300(72)의 8.3항에서</u>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한다. 단, <u>IMO Res. MEPC.174(58)에</u> 따라 승인된 평형수처리장치의 경우, <u>IMO Res. MEPC.174(58)의 8.2항에서</u>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 한다.</p> <p>(라) 평형수처리장치는 선내시험 또는 시운전 시에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.</p>	<p>-환경배관팀 제개정 요청 (ENP4500-935-2020) : 실제 도면 승인 목록과 일치시킴 : 제조중등등록검사 이외의 설치 적용 추가</p> <p>(개정) -기자재팀 제개정 요청 (MET4600-335-2020) : 협약의 개정에 따른 일자를 명확히 표기</p>

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(안)

(개발검토: 내부의견조회용)

제9편 “추가설비”

제3장 자동화설비

2021. 1.



기 관 규 칙 개 발 팀

2021.07.01.일자 시행사항

(건조계약일 기준)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자동화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자동화설비의 검사</p> <p>201. - 205. <생략></p> <p>206. 기관구역의 무인화설비의 해상시험 (2017) 【규칙 참조】</p> <p>(1) 규칙 206.의 2항에 규정하는 시험에 있어서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에 대하여는 선교제어장치에 의해 지침 그림 9.3.1(디젤선용) 또는 그림 9.3.2(증기터빈선용)에 표시한 시험요령에 따라 시험을 행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.</p> <p>(2) - (4) <생략></p> <p>그림 9.3.1 및 9.3.2 <다음페이지 참조></p> <p>208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- 제 5 절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자동화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자동화설비의 검사</p> <p>201. - 205. <현행과 동일></p> <p>206. 기관구역의 무인화설비의 해상시험 (2017) 【규칙 참조】</p> <p>(1) 규칙 206.의 2항에 규정하는 시험에 있어서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에 대하여는 선교제어장치에 의해 지침 그림 9.3.1(디젤선용) 또는 그림 9.3.2(증기터빈선용)에 표시한 시험요령에 따라 시험을 행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.</p> <p>(2) - (4) <현행과 동일></p> <p>그림 9.3.1 및 9.3.2 <다음페이지 참조></p> <p>208.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- 제 5 절 <현행과 동일></p>	<p>(개정)</p> <p>- 선교제어장치에 의한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시험시의 운전시간을 삭제함.</p>

<현행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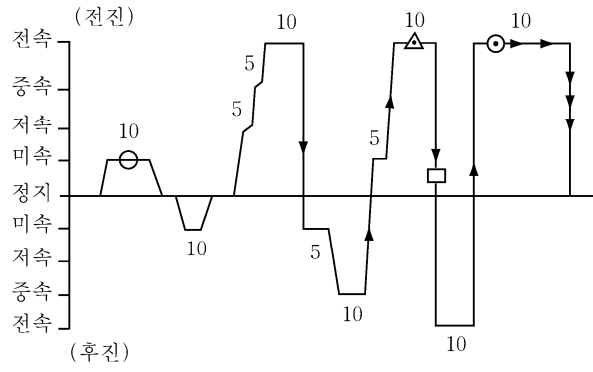


그림 9.3.1 디젤선의 시험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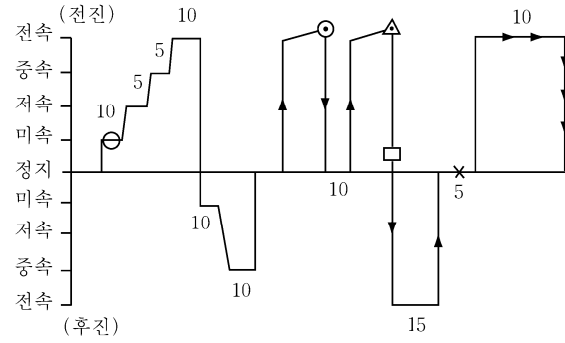


그림 9.3.2 증기터빈선의 시험요령

(비고)

1. - 7. <생략>
8. 숫자는 운전시간(분)을 나타낸다.

<개정안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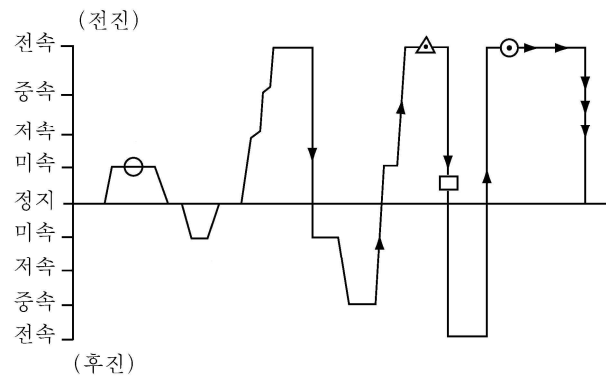


그림 9.3.1 디젤선의 시험요령 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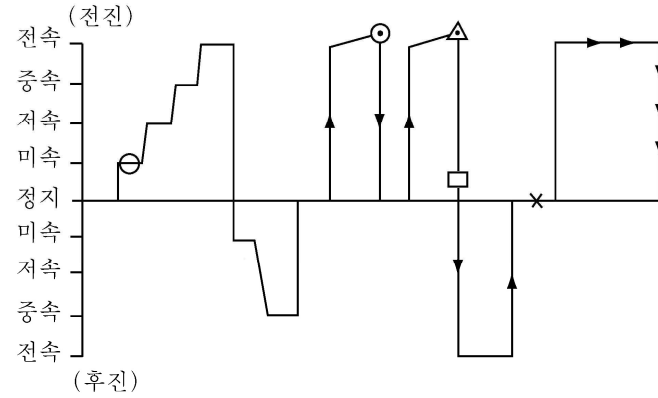


그림 9.3.2 증기터빈선의 시험요령 (2021)

(비고)

1. - 7. <현행과 동일>
8. 숫자는 운전시간(분)을 나타낸다.

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(안)(국문)

(외부의견조회)

9편



2021.01.

선체규칙개발팀

- 주 요 개 정 내 용 -

(1) 2021.07.01.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
◎ 내부 규칙 개정 요청 반영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하역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검사</p> <p>201. ~204. <생략></p> <p>205. 하중시험 【규칙 참조】</p> <p>1. 하중시험</p> <p>규칙 205.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따라야 한다.</p> <p>(1) ~ (4) <생략></p> <p>(5) 표 9.2.2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하중"이라 함은 시험하중을 $1.1 \times SWL$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~ 제 8 절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하역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검사</p> <p>201. ~204. <현행과 동일></p> <p>205. 하중시험 【규칙 참조】</p> <p>1. 하중시험</p> <p>규칙 205.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따라야 한다.</p> <p>(1) ~ (4) <현행과 동일></p> <p>(5) 표 9.2.2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하중"이라 함은 시험하중을 $1.1 \times SWL$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~ 제 8 절 <현행과 동일></p>